

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비례대표 송경택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28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,

서울시의 관리·감독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고, NPO지원센터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익활동지원이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센터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-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권한 중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는 관련 부서장에 대한 자료제출·출석 요구 권한, 센터의 사업 계획·운영규정에 대한 승인 권한을 완화 및 조정하였습니다.
- 또한 'NPO지원센터'의 명칭을 '공익활동지원센터'로 변경하여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으로 역할을 명확히하여 일반시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 기타 위원회 운영방식 효율화, 당연직 위원 직위 현행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감사합니다.